「202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26년 10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6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 1. 제안이유

2025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총괄

(단위: 천원)

| 회계별 | 예산액 (A) | 수 납 액 (B) | B/A (%) | 지 출 액 (C) | C/A (%) | 차기이월금 (D) | D/A (%) |
|---|---|---|---|---|---|---|---|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 34,680,156 | 36,558,148 | 105.42 | 24,402,327 | 70.36 | 12,155,821 | 35.05 |

### 가. 수입예산 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 예 산 액 (A) | 징수 결정액 (B) | B/A (%) | 수 납 액 (C) | C/A (%) | 예산대비 초과수납액 (D)=(C)-(A) | 미수금 (E)=(B)-(C) | E/A (%) |
|---|---|---|---|---|---|---|---|---|
| 합 계 | 34,680,156 | 37,693,825 | 108.69 | 36,558,148 | 105.41 | 1,877,992 | 1,135,676 | 3.27 |
| 사업수익 | 9,105,700 | 10,400,276 | 114.22 | 9,566,097 | 105.06 | 550,397 | 834,178 | 9.16 |
| 자본적수입 | 19,046,093 | 20,675,186 | 108.55 | 20,373,688 | 106.97 | 1,327,595 | 301,498 | 1.58 |
| 이월자금 | 6,618,363 | 6,618,363 | 100 | 6,618,363 | 100 | 0 | 0 | 0 |

### 나. 지출예산 결산

(단위: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A) | 지 출 액 (B) | B/A (%) | 이 월 액 (C) | C/A (%) | 불 용 액 (D) | D/A (%) |
|---|---|---|---|---|---|---|---|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 34,680,156 | 24,402,327 | 70.36 | 9,931,585 | 28.64 | 346,244 | 1 |

### 다. 차기이월금 처리상황

(단위: 천원)

| 구분 / 회계별 | 계 | 건설개량 이 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순세계잉여금 (예산대비초과 수납액+불용액) |
|---|---|---|---|---|---|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 12,155,821 | 5,330,996 | 196,774 | 4,403,815 | 2,224,237 |

## 3. 검토결과

### □ 수입 · 지출 결산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수입 결산액 | 지출 결산액 | 차기이월금 | 비고 |
|---|---|---|---|---|---|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 34,680,156 | 36,558,148 | 24,402,327 | 12,155,821 | |

○ 2025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 예산액은 34,680백만원이며,
- 수입결산액은 36,558백만원,
- 지출결산액은 24,402백만원이고,
- 차기이월금은 12,156백만원입니다.

## □ 수입예산 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금 | 비고 |
|---|---|---|---|---|---|
| 평창군지방공기업<br>상수도특별회계 | 34,680,156 | 37,693,825 | **36,558,148** | 1,135,677 | |

○ 2025회계연도 수입예산 실제수납액은 36,558백만원으로

사업수익 9,566백만원,

자본적수입 20,374백만원,

이월자금 6,618백만원입니다.

-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05.42%로 초과달성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99%로
  미수금은 1,136백만원입니다.

## □ 지출예산 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
|---|---|---|---|---|---|
| 평창군지방공기업<br>상수도특별회계 | 34,680,156 | **24,402,327** | 9,931,585 | 346,244 | |

○ 지출예산 집행액은 24,402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9,436백만원,

자본적 지출 8,978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5,988백만원입니다.

- 예산액 대비 70.36%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932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8.64%이며
  불용액은 34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결산서 19쪽)

○ 자산총계는 248,172백만원으로 전기대비 △63,36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6,808백만원이 증가한 16,194백만원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영업미수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 비유동자산은 전기대비 △70,174백만원이 감소한 231,978백만원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형자산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 부채총계는 2백만원으로 전기대비 △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자본총계는 248,170백만원으로 전기대비 △63,36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미처리결손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결산서 21쪽)

○ 총수익은 11,282백만원으로
매출액은 전기대비 1,350백만원이 증가한 9,202백만원으로
급수수익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판단되며
영업외수익은 전기대비 1,141백만원이 증가한 2,080백만원입니다.

○ 총비용은 23,202백만원으로
매출원가는 전기대비 2,419백만원이 증가한 21,932백만원으로
민간위탁비와 감가상각비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판매비와관리비는 전기대비 181백만원이 감소한 1,270백만원으로

○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11,920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결산서 93쪽)

| 적 요 | 금액(천원) | 연간조정량(㎥) | ㎥당요금(원) |
|---|---|---|---|
| 연간생산량(㎥) | 8,593,000 | | |
| 급수수익(상수도요금수입) | 8,460,936 | 4,731,239 | 1,788.31 |
| 총괄원가 | 31,366,394 | 4,731,239 | 6,629.64 |
| ㎥당 손실 | | | 4,841.33 |
| 요금현실화율(%) | | | 26.97 |
| 요금인상요인(%) | | | 270.72 |

○ 연간조정량(1년동안 수도요금 부과량)은 4,731,239㎥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8,461백만원으로
㎥당 요금은 1,788.31원입니다.

○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31,366백만원이며,
㎥당 원가는 6,629.64원으로, 총괄원가와 급수수익의 차액은 22,905백만원이며
총괄원가 계산상 요금인상요인은 270.72%로 나타납니다.

○ 연간생산량은 8,593,000㎥, 연간조정량은 4,731,239㎥으로
유수율(생산공급한 수돗물 중 요금부과로 이어진 물량의 비율)은
55.06%로 전기 54.92% 대비 0.14%p 상승하였습니다

○ 총괄원가 산정 결과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로는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검토의견

**【영업미수금 증가·감액 원인 및 대손충당금 산정 적정성 확인】**

(결산서 19, 28, 36, 37쪽)

○ 2025년 말 영업미수금은 1,13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32백만원(88.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발생분 미수금 834백만원 중 일반용 수도요금 미수액은 661백만원(37쪽)으로 79.2%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용 수도요금 미수금이 증가한 원인과 현재 납부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영업미수금 변동내역(28쪽) 및 명세서(36쪽)에는 **2024년 발생분 채권 중 12,734,810원이 2025년 중 조정 감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가별 감액내역 등 미수금이 감소한 사유와 관련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장부에 미리 반영하는 **영업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3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4백만원(22.7%) 증가하였으나, 미수금 대비 충당금 비율은 17.7%에서 11.5%로 하락**하였습니다.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만으로 충당금이 부족하게 설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영업미수금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산정기준과 장기 미납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토지 면적 및 장부가액 변동 사유 확인】** (결산서 19, 29, 30쪽)

○ 2025년 말 **토지 장부가액은 전년도 말 10,926백만원에서 9,106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보유토지 면적은 511,125㎡에서 790,747㎡로 279,622㎡ 증가**하였고, 공시지가 총액도 전년 대비 3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유토지 면적이 증가한 원인과 장부가액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부서의 설명을 듣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30쪽) (단위: 원)

| 소재지 | 당기말 | | | 전기말 | | |
|---|---|---|---|---|---|---|
| | 면적(㎡) | 장부가 | 공시지가 | 면적(㎡) | 장부가 | 공시지가 |
| 후평리 703 외 | 790,747 | 9,105,640,234 | 9,105,640,234 | 511,125 | 10,926,317,970 | 9,069,571,780 |

○ 유형자산 변동내역(29쪽)에는 토지의 증가·대체 금액 없이 '기타' 항목에 1,821백만원 감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면적 증가가 신규 취득에 따른 것인지 기존 자료의 정정에 따른 것인지, 장부가액 감소를 '기타'로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 변동내역 중 기타 항목의 구체적 변동 사유 명시】** (결산서 19, 29, 56쪽)

**<유형자산의 변동내역>** (29쪽)

(단위: 원)

| 구분 | 기 초 | 증 가 | 감가상각비 | 기 타 | 기 말 |
|---|---|---|---|---|---|
| 토지 | 10,926,317,970 | | - | (1,820,677,736) | 9,105,640,234 |
| 입목 | 111,693,529 | | - | - | 111,693,529 |
| 건물 | 3,894,598,926 | | (77,583,394) | (1,805,538,240) | 2,011,477,292 |
| 구축물 | 242,945,175,311 | 8,630,780,630 | (11,043,888,248) | (67,637,050,837) | 172,895,016,856 |
| 기계장치 | 5,440,887,965 | | (1,131,076,630) | 2,200,006,401 | 6,509,817,736 |
| 차량운반구 | - | | - | 2,000 | 2,000 |
| 공기구비품 | 1,302,290,813 | 313,887,810 | (132,652,545) | (952,947,903) | 530,578,175 |
| 기타가동설비자산 | 20,745,527,360 | 2,099,295,830 | - | (1,123,455,290) | 21,721,367,900 |
| 건설중인자산 | 16,785,105,720 | 2,317,429,565 | - | - | 19,102,535,285 |
| 합계 | 302,151,597,594 | 13,361,393,835 | (12,395,648,434) | (71,139,661,605) | 231,988,129,007 |

○ **유형자산의 변동내역(29쪽)** 중 기타 부분을 살펴보면 토지 1,821백만원, 건물 1,806백만원, 구축물 67,637백만원, 기타가동설비자산 1,123백만원 등 **여러 유형자산에서 자산금액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나, 결산서상 구체적인 변동 사유와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구축물은** 전년도에 기타 항목의 변동이 없었던 반면, 2025년에는 전기말 장부가액의 **약27.8%에 해당하는 67,637백만원이 기타 항목에서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규모가 큰 만큼 그 사유와 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사업소의 설명을 듣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형자산 변동내역 작성 시 기타 항목의 주요 증감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자산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자료 수치 오류 방지를 위한 대조·검증 절차 강화】** (결산서 19, 29, 56쪽)

○ 감가상각비 명세서(56쪽)와 유형자산 변동내역(29쪽)을 비교한 결과, 구축물의 당기 감가상각비는 각각 11,054,335,865원과 11,043,888,248원으로 10,447,617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유형자산 변동내역의 구축물 기말 장부가액은 172,895,016,856원으로, 재무상태표(19쪽)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의 172,884,569,239원과 동일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아울러 유형자산 변동내역에서는 개별 감가상각비의 합산액과 합계행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합계행의 기초금액에 증감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기말금액도 표시된 기말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 불일치 원인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정정하고, 향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상태표·주석·부속명세서 등 자료간 상호 대조·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결산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처리결손금 증가 및 자산재평가손실 반영 근거 확인】** (결산서 20, 22쪽)

○ 2025년 말 **미처리결손금은 181,369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98,309백만원보다 83,06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22쪽)에 따르면,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손실 71,140백만원과 당기순손실 11,92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재평가손실이 결손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 특히 전년도에는 없었던 대규모 자산재평가손실이 당기순손실과 별도로 반영되어 미처리결손금이 크게 증가한 만큼,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사유와 대상 자산, 손실금액의 산정 근거 및 결손금에 반영한 회계처리 근거**에 대해 사업소의 설명을 듣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결산 자료 작성 시 이러한 주요 변동의 사유와 세부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무상태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현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 (결산서 93쪽)

○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수돗물의 생산·공급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급수수익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상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과 요금 수준을 판단하는데 활용됩니다.

○ 2025년도 우리 군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6.97%로, 지난해 21.51% 보다 5.46%p 상승하였으나,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 결과 발표」[1]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의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74.7%로 여전히 전국 상수도 지방공기업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1)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 결과 발표(2026. 9. 2.)
-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기조로 필수 공공서비스 순손실 확대
지난 1년 동안 지방공기업은 총 3조 5,216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2조 6,813억 원 순손실 대비 8,403억 원(31.3%) 확대된 규모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동결 등으로 단위원가 대비 단위 요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되며 당기순손실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수도는 74.7%,** 하수도는 48.1%의 **요금현실화율을 보이며** 각각 4,907억 원과 1조 8,48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후략)

○ 다만 인구밀도와 급수구역, 수도시설 규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국 수치와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군의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요금 현실화 노력과 함께 비용구조 개선 등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결산서 89, 93쪽)

○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가운데 요금을 부과한 물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5년 유수율은 55.06%이며, 54.92%였던 지난해 대비 0.14%p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유수율을 살펴보면 2023년 57.56%에서 2024년 하락한 이후 2025년에 소폭 회복한 수준으로, 2023년보다 여전히 낮아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유수율 현황〉**

| 구분 | 연간생산량(㎥) | 연간조정량(㎥) | 유수율(%) |
|---|---|---|---|
| **2025년** | **8,593,000** | **4,731,239** | **55.06** |
| 2024년 | 8,396,000 | 4,610,705 | 54.92 |
| 2023년 | 7,780,000 | 4,477,995 | 57.56 |

○ 우리군의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수돗물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상수도 사업의 원가 회수와 요금현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누수 발생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 수도관을 우선 교체하는 등 생산된 수돗물이 주민들의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침 시스템의 정밀화를 통해 수돗물 손실을 줄이고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의 철저한 관리 요구】** (결산서 62, 73, 74, 77, 78쪽)

○ 202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4,680백만원, 지출액은 24,402백만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70.36%입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률인 77.12%(예산액 29,496백만원, 지출액 22,748백만원)보다 6.76%p 하락한 수치입니다.

○ 또한 차기이월금[2]은 총 12,156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5.05% 규모이며, 그중 건설개량이월이 5,331백만원, 계속비이월이 4,404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의 주요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민원 및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공사 지연, 동절기 도래 및 준공시기 미도래, 병행 추진 중인 도로공사의 미준공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계속비이월액 4,404백만원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은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노동·수항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특성상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월 규모가 크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주민 체감 사업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

2) 차기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건설개량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의 합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행정절차, 공사 일정 등의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 아울러 회계감사보고서에서는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가 관련 회계기준과 결산지침에 따라 재무상태와 운영 결과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사의견과 별개로 이번 검토에서 확인된 자료 간 금액 불일치와 주요 변동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보완하고, 미수금 및 이월사업 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